

<논문>

한국에서의 ‘민주공화국’의 개념사* —특히 ‘공화’ 개념을 중심으로—

이영록**

목 차

- I. 머리말
- II. 수용 초기의 민주공화국 개념
 - 1. ‘민주’와 ‘공화’의 초기 수용과 개념
 - 2. ‘민주공화’ 개념의 탄생과 정착
- III. 민주공화국 개념의 요동
 - 1. 임시정부 시기: 민주공화국과 균등
 - 2. 재현기: 민주공화국과 반공
 - 3. 제3공화국과 유신기: 민주공화국과 부국단결
- IV. 민주공화국 담론의 르네상스
- V. 전망: 맺음말을 대신하여

[국문 요약]

우리나라에 ‘민주’와 ‘공화’라는 용어가 처음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이다. 두 용어는 개념의 혼란을 야기하면서도 대체적으로 비군주국이라는 의미로 혼용되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가 헌법문서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임시헌장(1919. 4.11)에서였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헌법레이다. 국가형태를 지칭하는 민주공화국은 임시정부 시기에는 삼균주의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7-B00699).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LYL83@chosun.ac.kr

의 영향에 따라 균등이라는 실질적 이념과 결부되어 개념의 요동이 초래되었다. 제헌기에는 좌파의 인민공화국 개념에 대항하는 의미를 획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삼권분립이 민주공화국의 필수적 요소로 부각되었다. 제3공화국과 유신기에는 부국단결을 강조하는 수사로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집권층에 의해 애용되었다. 민주화 이후 한동안 민주공화국이란 용어는 그 보수적 색채로 인해 경원시되었으나, 소위 IMF 사태 이후로는 오히려 자유시장주의에 대항하는 이념으로서 특히 공화 개념을 중심으로 민주공화국 담론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개념은 '국가는 모두의 것'이라는 추상적 토대 외에는 논자에 따라 다양하며, 진보와 보수 양 진영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념으로 민주공화국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세계화와 다문화사회의 등장은 앞으로 민주공화국 개념의 정착에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있다.

[주제어] 민주공화국, 비군주국, 균등, 반공주의, 부국단결, 신자유주의

I. 머리말

이 글은 우리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언제, 어떻게, 어떤 의미로 도입 내지 생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의미의 변천을 겪으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는지를 개념사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 규정은 그 동안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되어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던 규정이다.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 헌법의 근본규범으로서의 그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그 의미에 새롭게 주목하는 움직임이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의 활발한 논의는 우리 사회의 소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주장의 규범적 정당성을 위해 공화주의적 원리와 헌법 제1조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더 이상 학계만의 논의에 머물지 않는다. 민주공화국이 정치권에서도 이념적 대안으로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가 하면,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에서는 시위대의 구호와 가요 가사로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한 시대의 폭발력을 가진 단어일수록 그 개념을 명확히 하는 일

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개념의 명확화는 언어 사용자들 사이에 자칫 일어날 수 있는 동상이몽을 막고,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단어가 갖는 사회적 작용력을 가능한 한 예측 가능한 범위 내로 묶어 두려는 시도 역시 학문의 본령에 속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일반 대중들의 용어사용법은 말할 것도 없고, 학계의 논의에서조차 민주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개념 이해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법학과 다른 학문 분야 사이에 놓인 민주공화국에 대한 이해의 간극은 매우 깊다. 사실 '민주'는 말할 것도 없고, '공화국' 혹은 '공화주의'와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현실을 지도해 온 근본 개념들은 서구에서도 시대에 따라 의미의 변천을 겪으면서, 때로는 서로 충돌되기까지 하는 다양한 개념 요소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개념의 혼란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다행히도 최근의 많은 연구들에 의해 서구에서 그 개념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는 어느 정도 밝혀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서구에서의 개념의 역사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다. 비록 민주와 공화라는 용어가 서구로부터 수입된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미 이 땅에서도 100년을 훨씬 넘는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생명력을 이어온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라는 장소의 역사적 성격을 '오지(奧地)'로 규정한 한 학자의 표현을 빌자면, 오지의 특징은 "외래 개념에 대한 저항과 오해가 그 어느 지역보다 강렬하다는 데"¹⁾ 있다. 특히 이 땅에서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공화국이라는 용어가 '민주'라는 또 다른 수식어와 성공적으로 결합하여 안착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민주와 공화의 결합이 이 땅에서 어떤 특별한 개념적 작용을 한 것은 아닌지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민주공화국'에 대한 한국에서의 개념사적 탐구를 시도한 연구는

1) 김용구, 『한국개념사총서 발간사』, 김효전, 『헌법』(소화, 2009), 6면.

애석하게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점은 한국에서 학문함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이 아직 일천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한국에서의 인문·사회과학 기본 개념에 관한 개념사적 연구는 “우리의 생존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이며, “개념의 정확한 인식에 의한 학술적인 담론의 세계화는 21세기에 우리가 한반도에서 한국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조건”²⁾이라는 말은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근현대 헌정사의 가장 근본적 개념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뜨거운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부상한 ‘민주공화국’ 개념에 대한 한국에서의 개념사적 고찰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Ⅱ. 수용 초기의 민주공화국 개념

1. ‘민주’와 ‘공화’의 초기 수용과 개념

한자어로서 ‘공화(共和)’의 유래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사기(史記)·주본기(周本紀)》에 의하면, 기원전 841년 서주의 여왕(厲王)이 폭정으로 민란에 의해 쫓겨난 후 소공과 주공 두 재상이 정사를 행했는데, 이를 공화라 했다.³⁾ 그러던 것이 19세기 중반경 서구어에 대한 번역어로 차용되기 시작했는데, 1850년대 이전에 이미 일본에서는 네덜란드어 republiik의 번역어로 ‘공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한다.⁴⁾ 한국에서는 신사유람단의 일원이었던 민종묵(閔種默)의 1881년 문견(聞見) 보고문 중에 ‘공화’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⁵⁾

2) 김용구, 위의 글, 9면.

3) 諸橋徹次, 「共和」, 『大漢和辭典』 卷二(大修館書店, 昭和 59), 84면; 송민, 「합중국과 공화국」, http://www.korean.go.kr/nkview/nklife/2001_3/11_7.html(검색일: 2010. 7.21).

4) 송민, 위의 글.

5) 일부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공화제’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한성순보 1884.1.3자 기사라고 하고 있는데[박찬승, 「한국의 근대국가 건설운동과 공화제」, 『역사학보』 200(역사학회, 2008), 309면], 정정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의 정체로 군민공치(君民共治), 입군독재(立君獨裁), 귀족정치와 함께 공화정치를 언급한 것이다.⁶⁾

'민주' 역시 이미 오래 전부터 한자어로서 상서(尙書) 등에서 '백성의 주인'이라는,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청말에 영어의 'democracy'에 해당하는 번역어로 정착되었다고 한다.⁷⁾ 한국에서는 적어도 마틴(W.A.P. Martin)이 중국어로 번역한 휘튼(H. Wheaton)의 『만국공법』이 전래된 때⁸⁾부터 그 안에 있는 '민주'라는 단어도 알려지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용 초기 '민주'나 '공화'의 의미에는 혼란이 보인다. 대부분의 용례에서 공화는 군주국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가장 흔한 사용례는 군주제도를 아예 갖지 않은 정치체제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드물게는 주권의 소재에 따라 군주국과 공화국을 구분하기도 했다. 이 경우 군주제도를 가지고는 있으나 주권이 자연인 1인에게 속하지 않는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는 공화국에 속한다는 점에서 전자의 사용례와 구분된다. 이런 혼란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군주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화국이라는 설명이 등장하기도 했다.⁹⁾ 일본의 영향에 따라 국체와 정체를 나누어 국가형태를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¹⁰⁾ 그것 역시 국가형태의 형식과 실질 사이의 괴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극히 일부에서이긴 하지만, 공화정을 입헌군주정 비슷하게 이해하고 있는 예외적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가령 1880년대 초반에 간행된 《地球圖經》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체를 군주국, 공화국(君民共治), 민주국(萬民共治)으로

6) 정옥자, 「신사유람단고」, 『역사학보』 27(역사학회, 1965), 135면.

7) Xiong Yuezhi, "Liberty, Democracy, President: The Translation and Usage of Some Political Terms in Late Qing China", in: M. Lackner, *New Terms for New Ideas: Western Knowledge and Lexical Change in Late Imperial China* (Leiden: Brill, 2001), p.74.

8) 한국에 언제 『만국공법』이 처음 전래되었는지에 관련하여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1877년 12월 17일 일본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가 조선의 예조판서 조영하(趙寧夏)에게 『星輶指掌』과 『만국공법』을 기증하였다는 기록이 최초라고 한다. 김용구, 『세계관 충돌의 정치경제학』(나남, 1997), 178면.

9) 가령 선우순, 「국가론의 개요 9호속」, 『서북학회월보』 11(1909), 16면.

10) 광한탁, 「헌법」, 『태극학보』 6(1907. 1), 27-28면; 선우순의 위의 면 등.

분류하고 있고,¹¹⁾ 「政體概論」(1908)에서 원영의(元泳義)는 정체를 군주국과 공화국으로 분류하면서, 공화국을 “군주가 신민과 함께 논의하는(君與臣民共相和議)” 정체로 설명하고 있다.¹²⁾ 그는 「정치와 진화」에서도 정치를 신관정치, 전제정치, 입헌정치, 공화정치, 민주정치로 분류하면서, “공화정치는 군신의 자유권리를 화동(和同)함이오 민주정치는 공화의 평민이 귀족의 경멸을 불수(不受)해야 일[반]권리를 보수(保守)함”¹³⁾이라고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설명은 서양에서 로마의 공화정, 그리고 중세 때 공화와 동일 개념으로 간주되게 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테이아(politeia)론 등이 혼합정체에 친화적이었다는 점 등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화국을 군주국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공화의 개념은 민주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혼란을 보인다. 우선 많은 용례에서 공화의 개념은 민주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가령, 1908년의 한 논설에서는 공화국을 과인적(寡人的) 공화국, 귀족적 공화국, 민족적 공화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족적 공화국은 곧 민주국이란 용어로 대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⁴⁾ 나진·김상연이 역술한 『국가학』(1906)에서도 귀족정체와 민주정체를 공화정체로 칭한다고 서술하고 있다.¹⁵⁾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화의 개념과 민주 개념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사례도 많이 발견된다. 다음의 문구는 대표적인 것이다. “공화제도의 폐(弊)는 다수호 압제에 재(在)하야 시정의 방침이 하층의 중의(衆意)를 아순(阿徇)함을 첩치(輒致)하니 지금에 민주제도라 칭하느니라.”¹⁶⁾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법학 개론 교과서 역시 정체를 공화정체, 과인정체, 군주정체로 구분하고 있는데, 공

11) 『地球圖經』(시립중로도서관 소장), 18면; 권오영, 『최한기의 학문과 사상 연구』(집문당, 1999), 192면에서 재인용.

12) 원영의, 「정체개론」, 『대한협회회보』 3(1908), 27면.

13) 원영의, 「정치와 진화(續)」, 『대한협회회보』 10(1909), 28면.

14) 법률독서인, 「국체의 구별」, 『대동학회월보』 8(1908), 26-27면.

15) 나진·김상연 역술, 『국가학』(1906), 영인본(민족문화, 1986), 99면.

16) 미상, 「국가의 개념(續)」, 『서북학회월보』 1(1908. 6.), 16면.

화정체를 “통치권이 인민 전체에 在호야 국가의 정치를 인민이 自行”¹⁷⁾하는 정체로 소개하고 있다.

사실 공화와 민주를 동일 개념으로 보는 이해는 이미 『만국공법』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만국공법』은 영어의 democracy에 해당하는 단어를 민주로 번역 하면서, 동시에 republican[form of government] 역시 ‘係民主之’로 번역하여 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¹⁸⁾ 알레베크(C. Aleveque)의 『법학사전』(1901)에서도 République는 ‘민주국’으로 번역되었다.¹⁹⁾ 이런 현상은 19세기 수용의 모지(母地)인 서구에서 귀족정이란 것이 더 이상 현실성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귀족적 공화국’이란 분류가 무의미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공화국 논의에서 귀족정은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한편 이 시기에는 영어의 republic에 해당하는 한자어로서 ‘민주’나 ‘공화’뿐만 아니라, ‘합중(合衆)’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羅馬人은 稱其國家曰 (레파블리크) 라 하니 卽 全國民‘合衆’之義也라.[강조 인용자]”²⁰⁾라 설명한 것을 찾아볼 수 있고, 저 유명한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도 “국인(國人)의 공화하는 정체를 다른 말로 “합중정체”로 일컫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²¹⁾ 좀더 이른 시기의 《한성순보》에서는 아예 공화와 함께 ‘합중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²²⁾ 그러나 공화나 민주의 대용어로서 ‘합중’의 사용은 매우 드문 편이었고, ‘합중’은 오히려 ‘북미합중국’과 같이 미국의 국가명을 표시하는 데 더 많이 사용되었다.²³⁾ 오늘날 합중이 미국명의 일부로서만 사용되고 있다는

17) 유성준, 『법학통론』 (박문사, 1905), 66면.

18) 加藤周一·丸山眞男, 『翻譯の思想』(岩波書店, 1991), 392면.

19) 김효전, 앞의 책, 73면. 데모크라시와 리퍼블릭의 번역상의 혼란은 1914년에 발간된 『영한사전』(교분관)에서도 발견된다. 여기에서 ‘democracy’는 ‘민주정체’로 번역되어 있지만, ‘republic’은 ‘민주국, 공화국, 공화정치’로 번역되고 있으며, ‘republican’은 ‘민정적’으로 번역되었다.

20) 송당 김성희, 「국가의의」, 『대한자강회월보』 13(1907. 7), 39면.

21) 유길준, 『서유견문』, 영인본(경인문화사, 1969), 145면.

22) 「구미입헌정체론」, 『한성순보』 10, 1884. 1. 3.

23) 이 경우 합중은 ‘연방’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서 ‘합중’이라는 한자어가 이중적 의미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송민희의 앞의 글 참조.

사실은 공화나 민주의 대용어로서의 기능이 이후에는 사라졌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보듯, 이 시기에는 공화가 영어의 republic에 해당하는 용어로 아직 확고히 정착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 개념에도 혼란이 초래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공화’의 용례에 이미 이후의 개념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특징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공화’라는 용어가 국가형태의 문제로만 이해되었다는 사실이다.

서구에서 공화국(res publica)은 그 기원에 있어 공동선(common good)의 지향이라는 통치의 에토스를 표현하는 용어였다.²⁴⁾ 국가형태 문제가 공화국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기는 했어도, 공화국이 특정 국가형태와 자동적으로 결부되어 이해된 것은 아니었다. 서양에서도 공화국이 국가형태로서 군주국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중세 후기부터라고 한다.²⁵⁾ 그러나 그 후에도 16-18세기 동안에 공화국은 정치적 이상이나 헌법상의 원리를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이런 전통이 1970년대 이후 새롭게 공화주의의 부활로 이어지고 있다.²⁶⁾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공화 개념의 수용은 처음부터 그 의미를 너무 협소하게 설정했다는 비교개념사적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 이 점은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약간 앞서 서구의 정치사상을 받아들인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한 특징은 서구에서도 비군주국이라는 의미로 공화 개념이 다시 축소되어 있었던 19세기에 비로소 그 용어의 수용이 일어났다는 수용사적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바로 이런 공화 개념의 축소적 이해가 군주제 국가였던 당시의 사정에서 공화국 논의가 갖는 폭발력이었고, 이 때문에 공화국에 대한 입장은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조선왕조의 패망과 중국 신헌혁명이라는 역사적 계기가 주어지기 전까지 ‘공화’의 개념이 ‘급진’의 이미지와 결부되

24) J. Isensee, "Republik", in: *Staatslexikon* 4(Freiburg · Basel · Wien: Verlag Herder, 1988), S. 883.

25) J. Isensee, a.a.O., S. 883.

26) J. Isensee, a.a.O., S. 883-884.

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²⁷⁾ 공화국에 대한 논의가 식민지 기간 동안 주로 해외 독립운동 진영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역시 그것이 일제의 천황제에 대해 갖는 폭발력 때문이었을 것이다.²⁸⁾ 이런 점에서 이 시기 공화의 개념은 가장 뜨거운 정치적 법적 개념어 중의 하나이자, 실로 우리의 근대사를 “서구의 근대사에 합류케 하는 하나의 혁명적 개념”²⁹⁾이었던 것이다.

2. '민주공화' 개념의 탄생과 정착

한일병합과 동시에 공화에 관한 논의가 한동안 사그라진 상황에서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헌장(1919. 4.11.)이 제1조에서 '민주공화제'를 선언한 것은 이 땅에서 전개된 공화의 개념사에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법문서 형식을 통하여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공화제를 천명했다는 사실이 갖는 놀라움은 일단 논의로 치더라도, '민주'라는 수식어와 결합한 '민주공화'라는 용어를 삼입한 임시헌장 기초자들의 독창성, 그리고 그것이 이후의 역사에서 한 단어로 확고하게 굳어진 용어적 확정력은 공화의 개념사에서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비록 그것이 '임시'헌장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임시헌장의 기초자들이 참조했음직한 외국의 헌법문서들 중에는 '민주공화'라는 단어를 직접 명기한 예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우철에 따르면, “임시헌장 제1조의 민주공화제 규정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많은 헌법문서들 가운데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형식과 내용”³⁰⁾이라고 한다.

27) 서구 문물 수용에 앞장섰던 개혁파들조차 대체로 입헌군주제 주장에 머물렀다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28) 국내에서는 1929년에 공화정부 사건으로 명명된 사건이 있었다. 강원도 일원에 일대 검거 선봉을 일으킨 이 사건은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3년 가까이 걸렸는데, 초기 신문보도에서는 '공화'에 해당하는 부분을 '○○'로 처리할 만큼 예민한 문제였다. 『동아일보』, 1929. 5.18, 22, 31자 등.

29) 한태연, 「공화국의 이론적 과제: 미국헌법과 프랑스헌법을 중심으로」, 『동아대법학연구소』, 1998, 113면.

30) 신우철, 『비교헌법사: 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법문사, 2008), 300면.

임시헌장 기초자들에게 가장 친숙했던 중국의 헌법문서들 가운데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는 단기헌초(段記憲草, 1925) 제1조에서 비로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나마 여기서 공화국의 의미는 ‘연방국(聯邦國)’ 내지 ‘연성국(聯省國)’의 뉘앙스가 강했다는 것이다.³¹⁾ 유럽에서도 민주공화국(demokratische Republik)이라는 용어가 헌법전에 명기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 2월의 체코슬로바키아헌법과 그 해 10월의 오스트리아연방헌법에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임시헌장 제1조에서 ‘민주공화제’를 명기한 그 선구성은 확실히 부각해 둘 필요가 있다.

임시헌장에서 ‘민주공화’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래로, 적어도 남한의 주류적 흐름에서는 ‘공화’를 ‘민주’라는 단어와 결합해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 임시헌장이 제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21년에 삼남파(三南派)에 의한 조선‘공화’정부 수립이 있었다고 하나,³²⁾ 이처럼 ‘공화’만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그 후로도 ‘민주공화’라는 새로운 조어에 대해서는 간간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좌우의 대립과 관련하여 도전이 있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민주공화’란 용어는 굳건히 살아남았고, 오히려 ‘공화’의 개념사보다는 ‘민주공화’의 개념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 설명력을 가질 만큼, 공화란 단어는 앞의 수식어 민주와 화학적 결합을 이루었던 것이다.³³⁾

그러나 임시헌장에 최초로 ‘민주공화’라는 단어가 명기되었다는 선구성은 헌법조문례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서구의 예는 차

31) 신우철, 위의 면.

32) 김정명 편, 『朝鮮獨立運動Ⅱ』, 明治百年史叢書(原書房, 1967), 영인본(국학자료원, 1999), 480면.

33) 물론 ‘공화’라는 단어가 민주와 별개로 떨어져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제2공화국’, ‘제3공화국’ 등과 같이 그저 헌정사의 시대구분을 위한 의례적 용어로 사용되거나, ‘바이마르공화국’과 같이 국가명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 혹은 ‘삼성공화국’, ‘아파트공화국’과 같이 풍자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아니면 ‘로마의 공화정’ 등과 같이 서양정치사의 설명 중에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중 앞의 세 경우에서 공화국의 사용은 비군주제 국가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비군주제라는 것이 임시헌장(1919. 4) 이후 현실에서 전혀 의미를 갖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저 국가를 대칭(代稱)하는 용어로 퇴화되어 사용된 경우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치하고서라도, 이 땅에서도 일찍부터 이미 '민주공화'라는 단어가 드물게나마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대한유학생회보 제2호(1907. 4)의 「국가의 주동력」이라는 논설에서는 미합중국을 “민주공화국의 개조(開祖)”로 표현하고 있고,³⁴⁾ 서북학회월보 제12호(1909. 5)에 게재된 한 논설에서도 귀족공화제와 대비하여 “전인민의 의지가 직접 又 간접(대의적)으로 독립공유의 최고권된 경우면 此를 즉 민주공화제”³⁵⁾라고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후자의 예에서 보듯이, 이때의 '민주공화'는 국가형태로서 민주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1919년 임시헌장에서 역사적인 '민주공화제' 규정을 두게 된 것은 이와 같이 앞선 시대의 조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임시헌장 제정 시 '민주공화제'의 의미를 추론할 만한 특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³⁶⁾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임시헌장에 규정된 민주공화제의 의미 역시 군주제를 배격하되, 귀족제 혹은 과두제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정체의 지향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민주공화국 개념의 요동

1. 임시정부 시기

—민주공화국과 균등

민주공화국이란 단어는 1920년대 해외독립운동 진영에 공산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그 개념에 요동을 초래하게 된다. 그 단초는 좌파적 입장에서 민주공화국을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체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데서 비롯되었

34) 미상, 「국가의 주동력」, 『대한유학생회보』 2(1907), 5면.

35) 선우순, 「국가론의 개요(續)」, 『서북학회월보』 12(1909. 5), 10면.

36) 박찬승, 앞의 글, 306면.

다. 『개벽』에 실린 1923년 7월의 한 세태비평에서는 세계 정치의 역사를 “부락 정치로 군주전제정치, 전제정치로 군주입헌정치, 군주입헌정치로 민주공화정치, 민주공화정치로 노농공산정치에까지 도달”³⁷⁾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1931년에 한 잡지에서 러시아의 소비에트체제를 민주공화국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³⁸⁾ 역시 그 한 사례이다.

그러나 보다 지속적이고 주류적인 개념의 변화 조짐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좌우합작을 위한 노력 가운데서 목격된다. 이 시기 좌우합작의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한 것이 조소앙의 삼균주의였는데, 이 시기에 나타나는 민주공화 개념의 요동은 바로 이 삼균주의의 영향으로부터 일어났다. 기존의 민주공화국 개념으로는 이 새로운 이념의 이상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앞에서처럼 민주공화국 개념을 역사에 뒤떨어진 낡은 개념으로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삼균주의의 이상에 맞게 새롭게 포장하여 사용하는 길을 택했다. 따라서 이들은 기존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단순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완전한’, ‘진정한’, 혹은 ‘새로운(新)’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내걸었다.

한국독립당, 의열단, 신한독립단, 조선혁명당, 민주대한인독립단 대표가 모여 난징에서 1935년 결성한 민족혁명당은 그 당의(黨義)에서,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에 기초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³⁹⁾을 표방했다. 김구 등이 민족혁명당에 대항하여 결성했던 한국국민당 역시 창당선언문에서, “전민적(全民的) 정치, 경제, 교육 균등의 3대 원칙 확립에 의한 완전한 민주공화국 건설”⁴⁰⁾을 선언하였고, 이를 당의에서는 ‘신민주공화국’⁴¹⁾으로 표현하였다. 지청천 등이 중심이 되어 1937년에 조직한 조선혁명당 역시, “정치 경제의 평등 기초 위에서 민족적 자주독립의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⁴²⁾할 것을 선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37) 미상, 「一瞥」, 『개벽』 37(개벽사, 1923. 7), 76면.

38) 미상, 「露西亞特輯」, 『삼천리』 3-9(삼천리사, 1931. 9), 64면.

39) 김정명, 앞의 책, 540면.

40) 김정명, 앞의 책, 566면.

41) 김정명, 앞의 책, 647면.

42) 김정명, 앞의 책, 646면.

민족주의 좌파 계열의 단체들이 중심이 된 조선민족전선연맹도 그 정치 목적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건립”⁴³⁾에 두었다. 조소앙이 “임시헌법이 초기에는 ‘막대한’[강조 인용자] 민주공화국만을 목표로했다”⁴⁴⁾고 비판한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좌우파를 막론하고 이 시기 민주공화국에 대한 재해석은 광범위하게 퍼졌다.

그러나 재해석이 ‘진정한’, ‘완전한’ 등과 같은 수식어와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단어 자체에 아직은 변화된 개념이 확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이런 경향은 1940년의 대한민국임시약헌에서 ‘민주공화국’ 규정이 삭제된 데 대한 설명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임시약헌에서 왜 불현듯 민주공화국 규정이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에 일었던 민주공화국 개념의 재해석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새로운 이념을 담기에는 불만족스러웠던 민주공화국이란 용어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⁴⁵⁾

그러나 민주공화국이란 용어의 기피는 1944년 임시헌장에서 다시 민주공화국 규정이 부활함으로써 일과성 사건으로 끝나고 만다. 그만큼 민주공화국이란 용어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서 더 이상 폐기해 버릴 수 없는 마력을 가진 용어로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그 의미는 기존 의미와 새롭게 부여된 의미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고착되지 못한 애매한 상태로 한

43) 정학섭, 「일제하 해의 민족 운동의 좌우합작과 삼균주의」, 『사회와 역사』 1(한국사회사학회, 1986.12), 187면에서 재인용.

44) 대한민국국회도서관, 『대한민국임시의정원문서』(대한민국국회, 1974), 323면.

45) 신우철 역시 중국 국민당 정부의 五五憲草(1936.5.5)와 期成憲草(1940. 4. 2)가 제1조에서 ‘三民主義共和國’을 내건 점, 조소앙이 약헌개정위원회 제5차 회의(1942.12.26)에서 “대한민국은 均治共和國임”으로 개정을 주장한 점, 그리고 임시정부를 떠받치고 있던 한국독립당의 당의가 “정치, 경제, 교육 삼권균등의 신민주국가 건설”이었던 점을 들어, 국가형태 규정을 잠시 유보해 둘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신우철, 앞의 책, 406면). 반면 김영수는 1940년 임시약헌이 그 이전의 1927년 임시약헌과 비교하여 “총체적으로 조문수가 8개조가 줄어 42개조로 되어 명칭도 약헌이란 것을 그대로 채택한 것을 보면 민주공화제는 대한민국이란 국호와 주권재민이라는 말 속에 표시된 것으로 보고 조문을 간소화한 것 같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김영수, 『한국헌법사』(학문사, 2000), 288면.

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민주공화국 개념에 대한 재해석은 이제까지 국가형태의 문제 안에만 갇혀있던 민주공화국 개념에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균등이라는 이념적 목표에 국가를 연결시키는 실질적 개념으로 전화한 것이다. 이것은 서구에서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그 출발에서 공동선이라는 실질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었다는 사실과 일면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서구에서도 특히 경제적 균등의 문제는 공동선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시기의 개념의 변화가 서구의 공화국 개념의 추가 수용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의 개념의 독자적 발전에 따른 결과였던 것이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도 발견된다.

우선 이 시기 우리의 민주공화국 개념은 독자적 내용으로서, 균등을 실현할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민주공화국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실현하는 국가이다. 또한 삼균주의에서 그 각각을 실현할 방책으로서 보통선거권, 토지국유화 및 대기업의 국유화, 그리고 무상의 무교육이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과 같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그런 방책들을 제도화시킨 국가를 의미하였다. 실제로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표방한 단체들의 정강이나 정책은 삼균주의가 제시한 주요 방책들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민주공화국은 우리만의 독특한 개념을 창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 비슷한 개념의 요동은 ‘민주’ 개념 자체에서도 발견된다. 삼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던 한국독립당이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하는 ‘신민주’[인용자 강조]국가”⁴⁶⁾를 주창한 것은 그 한 예이다. 조소앙은 신민주주의를 설명하기를, 자본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고, 무산자 독재를 의미하는 사회주의도 아니다. 그것은 전민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하였다.⁴⁷⁾ 이로 보건대, 이 시기 민주공화국의 개념의 요동은 ‘민주’라는 앞의 수식어의 개념 변동을

46) 김정명, 앞의 책, 647면.

47) 정확섭, 앞의 글, 189면에서 재인용.

통해서 일어났을 수도 있고, '민주=공화' 혹은 '민주국=민주공화국'이라는 이전 시대의 관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조의 유입이 민주와 민주공화국의 개념 요동을 동시에 초래했을 가능성도 높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점은 이런 새로운 개념의 형성에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한 것은 '전체로서의 국민(全民)'이라는 개념이었다는 사실이다. 식민지 이전 시기에도 공화정체나 민주정체의 설명에 비슷한 용어들이 사용된 예가 보이지만, 그것이 말 그대로의 민주 개념이 가질 수 있는 민중 지향의 편파성과의 대비를 명확히 의식하고 사용된 것 같지는 않다. 가령 앞의 1908년 원영의의 논설에서 “共和政治는 至公無私”⁴⁸⁾라든지, “民主政治는 出自萬民心”⁴⁹⁾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것은 단순 다수를 의미하는 본래적 민주 개념이 내포할 수 있는 편파성에 대한 대비라기보다는 군주제 및 귀족제에 대한 대비로 설명한 것이었다.

또한 김상연과 나진이 공동으로 역술한 『국가학』에서는 “凡국가법제의 기초 원천은 인민의 집합체”에 있고, “凡국가의 목적은 평형적 정의의 원천으로 사회각종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화하여야만 집합체를 위함에 在호고”라고 쓰고 있지만,⁵⁰⁾ 이것은 국가 자체에 관한 설명이다. 이 책에서 공화정체 자체는 기술적(記述的) 개념으로서 국가 목적에 관한 한 가치중립적이다. 오히려 이 책에서는 군주정체보다는 공화정체가 더 국가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민주나 공화라는 개념이 정치 영역을 넘어 경제 사회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국민 전체의 균등을 달성해야 한다는 이념과 개념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좌파 성향의 단체 일부에서이긴 하지만, 또 다른 방향에서 민주공화국의 기존 개념을 수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1933년 결성된 신한독립당은 “중앙집권제의 민주공화국을 건설할 것”⁵¹⁾을 강령으로 내걸고 있

48) 원영의, 앞의 글(각주12), 27면.

49) 원영의, 앞의 글(각주12), 27면.

50) 나진·김상연 역술, 앞의 책, 134면.

었는데, 민족혁명당으로 통합되면서 그 강령의 내용은 “민주집권의 정권을 수립한다”는 당강(黨綱)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민족혁명당이 1938년 당강을 수정하면서 해당 강령의 표현을 “진정한 민주(집권)의 정권을 수립하는) 공화국을 건설한다”⁵²⁾로 바꾸었다. 이로써 민족혁명당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군 등국가라는 의미와 함께 중앙집권제의 국가라는 의미로도 사용했던 것이다. 이런 흐름은 다음에 살펴보게 되는 바와 같이, 해방 후 민주공화국의 개념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2. 제헌기

-민주공화국과 반공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는 해방 후에도 여전히, 아니 해방 후에 더욱 그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었다. 건국헌법의 기초사(起草史)에 등장하는 해방공간의 모든 헌법초안들에 민주공화국 규정이 삽입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제헌국회의 헌법안 심의에서도 건국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 용어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여 별 논란거리가 되지 못했다. 민주공화국과 공화국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박해정(朴海楨)의원의 질문,⁵³⁾ 공화라는 용어보다는 ‘동화(同和)’라는 용어가 우리에게는 보다 자연스럽다는 이병국(李炳國) 의원의 발언,⁵⁴⁾ 그리고 국호에 들어가 있는 민국이나 민주국, 그리고 공화국이 중복의 의미가 있으므로, 제1조를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로 수정하자는 김병회(金秉會) 의원의 수정제안,⁵⁵⁾ 그리고 헌법 초안이 과연 삼균주의를 채택한 것인지 의문을 표시하면서 최운교(崔雲敎) 의원이 ‘민주주의 공화정치’라는 용어를 잠깐 언급한 것⁵⁶⁾이 제헌의원

51) 노경채, 「신한독립당」,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23600&ty=2>(검색일: 2010. 7.21)

52) 김정명, 앞의 책, 621면.

53) 대한민국국회, 『제헌국회속기록』 1, 영인본(선인문화사, 1999), 224면.

54) 대한민국국회, 위의 책, 229면.

55) 대한민국국회, 위의 책, 349면.

56) 대한민국국회, 위의 책, 226면.

들이 민주공화국이란 용어에 보인 관심의 전부였다. 그나마 김병희 의원의 수정안은 삼청을 얻지 못하여 상정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폐기되고 말았다.

제헌국회에서의 이상과 같은 약간의 언급은 수용 초기 민주와 공화의 관계에 대한 혼란, 그리고 그것들과 삼군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혼란이 미약하게나마 잔존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건국헌법의 제정으로 인해 이제 민주공화국의 개념을 정밀하게 정의하는 것은 바야흐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전문 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건국헌법의 주도적 기초자요 한국헌법학의 토대를 놓은 유진오에 따르면, 민주공화국의 '민주'와 '공화'는 각각 정체와 국체를 규정한 것이었다. 즉 “공화국이라 하면 세습 군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를 말하고, 20세기 초까지는 보통 공화국과 민주국은 동의어로 사용되었으나, 그 후 공화국 중에도 권력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정체를 채택하는 국가도 있고, 나치스 독일과 같이 권력분립을 폐지 또는 유명무실하게 한 독재정체를 채택하는 국가도 있으며, 권력통합을 기본으로 하는 소비에트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도 있으므로, 민주정체를 기본으로 하는 공화국이라는 의미에서 민주공화국이라 했다는 것이다.⁵⁷⁾

이후 유진오의 해설은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통설적 지위를 굳히게 된다. 이에 대한 유력한 반박으로는 오랫동안 헌법학자 박일경의 주장이 있었을 뿐이었다. 국체는 주권의 소재에 따른 구별이고, 정체는 주권의 행사방식에 따른 구별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박일경은 1949년 『헌법』 이래 줄곧 민주공화국을 민주정체와 공화정체를 규정한 정체 규정으로 보고, 국체는 제1조 제2항(제헌헌법 제2조)의 주권재민(主權在民) 규정이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⁵⁸⁾ 그러나 이런 학설의 대립이 민주공화국의 개념 자체에 대한 차이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민주공화국 개념은 실질적 개념화의 가능성을 닫아버린 채 다시 국가형태 혹은 국가조직의 문제로 환원되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전 시기 민주공화국 개념에 포함되었던 균등 이념까

57) 유진오, 『신고 헌법해의』(탐구당, 1952), 45면.

58) 박일경, 『헌법』(조문사, 1949), 40-41면.

지 건국헌법에서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삼균주의 그대로의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 건국헌법에는 모든 영역,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 실질적 균등을 구현하려는 정신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유진오는 이를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 혹은 현대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민주’라는 개념의 확장이 ‘민주공화국’의 개념에까지는 침투해 들어오지 못한 것 같다는 점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문법학적 개념으로서 민주공화국은 항상 정부형태나 국가형태를 지칭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다.⁵⁹⁾

이런 전문법학적 설명과 별개로 이전 시기의 전통을 학술적으로 잘 소화하여 낸 설명은 오히려 재야학자에게서 보인다. 설의식(薛義植)은 1947년의 한 편저의 서문에서 민주공화에 대한 설명을 가하고 있는데, 다소 길더라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의 명분을 세우는 바에 우리의 국체는 ‘민주공화’라는 이 글자에 요약될 뿐이오 또 그로써 족하다. ‘민주’인지라 모든 주권이 ‘인민’에게 있음이 물론이니 인민으로부터 발원되지 않는 권력의 존재는 일절로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공화’인지라 모든 정책이 ‘전체’의 조화에 있음도 물론이니 전체의 균형이 확보되지 않는 권력의 편재도 일률로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 일 파당이나 일 집단이나 일 계급 등등 아전적(我田的) 분야가 배제된-오직 한 개의 제일(齊一)된 ‘전체’가 등장되어야 할 것이다.⁶⁰⁾

그는 위와 같은 민주공화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평등과 자유, 그리고 생존권의 보장을 끌어내었다. 민주공화국이 자본주의적 자유주의나 계급독재라는 의

59) 사회과학 일반에서의 용법 또한 마찬가지로 형식적 국가형태론에 머물러 있었다. 가령 1954년 선문사에서 발간한 『사회과학사전』에서는 공화국을 “군주국에 대립하여 국가 원수의 지위를 그 고유의 권리로써 소유하는 군주라는 것이 없는 국가이다. 따라서 귀족정치의 나라도 공화국의 일종이지만 귀족정치가 없어진 금일에 있어서는 공화국이라는 것은 민주국(Democracy)과 동의(同義)이다”고 설명함으로써 수용 초기의 주류적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0) 설의식, 「임정을 앞두고」, 새한민보편집국, 『임시정부수립대강: 미소공위자문안답신집』(새한민보사, 1947), 12면.

미에서 공산주의 양자를 부인하는 제3의 체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개념의 실질화가 '민주'의 개념보다는 '공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민주주의가 단순히 인민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공화는 민주주의가 전체의 조화를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공화국이야말로 "전 인민에 의한, 전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원도(原道)"⁶¹⁾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서구에서의 공화의 문체사적 의미에 가장 근사하게 접근했던 이와 같은 설명은, 그러나 곧 건국헌법의 제정과 함께 등장한 민주공화국의 전문법학적 개념에 자리를 양보해야만 했다.

한편 민주공화국에 대한 전문법학적 개념의 역할은 민주공화국을 형식적 개념으로 되돌린 데만 머무른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 민주공화국 개념에 부가된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곧 앞의 유진오의 설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공화국에 있어 권력분립이 필수적 요소로 부각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특징은 해방 후 격화된 좌우대립에서 기인하였다. 이 시기 좌우의 대립의 핵심은 토지개혁이나 친일파 청산 같은 시대 특유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경제체제보다도 오히려 권력구조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좌파의 권력집중제에 대하여 우파 진영에서는 결사적으로 권력분립을 주장하였는데, 이런 입장이 민주공화국 개념에 투영되었던 것이다.

이미 보아온 대로, 해방 전부터 좌파 진영에서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를 부르조아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격하시키려는 경향과, 그것을 권력집중제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전파시켜 계속 이용하려는 시도가 동시에 존재했다. 그러나 해방이 되면서부터는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⁶²⁾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를 포기하고 대신에 인민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좌파적 국가 건설 구상을 선명히 드러내고자 하였다. 해방 직후 좌파 세력이 주축이 되

61) 설의식, 위의 글, 12면.

62) 좌파 진영인 민주주의민족전선 측에서 1946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헌법초안은 명칭을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으로 하고 있다.

어 조직한 ‘조선인민공화국’에서 이미 그런 경향은 도드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공화국은 이제 인민공화국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반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획득하게 되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인민공화국은 계급독재의 국가를 의미하므로 결코 민주공화국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민주공화국으로써 공산주의까지도 포용하려는 시도는 파탄이 나고, 오히려 민주공화국은 공산주의와의 전선에서 가장 전투적인 용어의 하나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이다.

3. 제3공화국과 유신기

— 민주공화국과 부국단결

민주공화국이란 용어가 새롭게 시대의 화두로 재등장하게 된 것은 5.16과 함께 등장한 군부세력에 의해서이다. 그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새로운’ 또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표방했기 때문이다. 군정 시절 초헌법적 기본법으로 작용하였던 국가재건비상조치법(1961. 6. 6) 제1조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설치를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고 부패와 부정과 빈곤으로 인한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여 ‘진정한 민주공화국’[강조 인용자]으로 재건하기 위한 비상조치”로 선언하였다. 1962년의 헌법 역시 전문에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는 5.16 주도세력의 자의식을 표출하였다. 이 시기 이들 5.16세력이 주동이 되어 창설한 정당의 명칭도 ‘민주공화당’이었고, 박정희 역시 그의 공적 연설 가운데서 “진정한 민주공화국”,⁶³⁾ “새롭고 진정한 민주공화국”,⁶⁴⁾ “민주공화의 낙토”⁶⁵⁾의 건설을 역설하며, “민주공화의 기치”⁶⁶⁾를 높이 들기도 했다.⁶⁷⁾

63) 대통령비서실 편,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I : 최고회의의편』(대한공문사, 1976), 4면(1961. 7. 3).

64) 대통령비서실 편, 위의 책, 119면(1961.11. 7).

65) 대통령비서실 편, 위의 책, 490면(1963. 8.30).

66) 대통령비서실 편, 위의 책, 494면(1963. 8.31).

67) 박현모, 「박정희의 ‘민주공화주의’관 변화 연구: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6-2(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7)년의 선행조사를 참조하였다.

이 시기 민주공화국이란 용어는 이처럼 주도세력의 정치적 목표를 표현하는 핵심 수사(修辭)로 역사 속에서 다시 한 번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의미를 한정하여 사용된 것 같지는 않다. 우선 민주공화라는 용어가 민주나 자유민주라는 용어와 구분 없이 수시로 혼용되고 있는데다가, 이상적인 정치질서나 국가상태라면 어떤 요소라도 포괄하는 만능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광범위한 맥락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국과 의미가 연관되고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점들을 추려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1조의 문구를 통해 이미 반공, 반부패, 부강 등의 가치가 민주공화국의 개념과 연결되고 있음은 쉽게 간취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의미연관은 박정희의 연설문 속에서도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민주공화국은 공산주의에 대립하는 정치체제이다. 나아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위해서는 국가기강과 도의의 확립, 멸사봉공의 정신, 그리고 국민적 단결이 요구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또한 한때 민주공화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던 경제적 균등 대신 압도적으로 경제적 발전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되는 점이다. 사실 그의 연설에서 부국의 이념은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선의 목표였다. 이로써 이 땅에서 민주공화국이란 용어는 다시 한 번 개념의 실질화의 길과 함께, 우리의 특수한 시대적 요청들과 결부되게 되었다.

물론 서구에서도 공화주의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시민적 덕성의 강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 사적 이해와 연줄에 얽힌 부패를 청산하고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가 개조의 목표를 민주공화의 기치로 키쳐세운 것은 서구의 공화주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서구 공화주의 발전사에 있어서의 시민적 덕성은 타인의 지배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자주성과 동전의 양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인 반면에, 이 시기 집권세력에 의한 민주공화의 강조는 부국강병을 표방하는 자신들의

목표에 국민들을 동원한다는 맥락에서 국민정신과 태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는 자의식은 사실상 새로운 헌법의 제정으로 보아야 할 1972년의 유신헌법 전문에도 그대로 살아남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 전후로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 대신에 한국적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⁶⁸⁾ 그러나 이 시기 한국적 민주주의로써 말하고자 했던 바는 이전 시기 진정한 민주공화국과 결부시켰던 내용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다 극단적으로 강조한 내용이었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이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에 스며들었던 이전 시기의 정서와 내용들은 탈색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법학계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설명은 현실의 변화를 외면한 채 실망스럽게도 여전히 국가형태론 내의 지엽적인 논쟁에 머물러 있었다. 정치현실에서 나타난 개념의 새로운 발전을 학문적으로 보다 엄밀히 설명하려는 시도도 보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새로운 개념 변용에 대항하는 개념 투쟁도 없었다. 개념 투쟁을 방기한 것은 전문법학자뿐만이 아니었다. 정치적으로 집권세력에 대항했던 야당이나 재야세력도 그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다. 민주주의나 자유의 이름으로 항거하던 이들조차 변질된 민주공화국이란 용어와의 정면 대결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민주공화국이란 용어는 이미 공정한 개념 투쟁의 장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시대의 각인을 깊게 안고 있었던 것이다.

IV. 민주공화국 담론의 르네상스

유신헌법의 몰락과 함께 한국적 민주주의란 용어는 ‘서울의 봄’이라고 일컫는

68) 박현모의 관찰에 의하면, 사실 이 시기 전후로 박정희의 연설문에 민주공화국이란 용어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박현모, 위의 글, 89면.

잠깐 동안의 민주화의 물결만으로도 용도 폐기되기에 충분했다. 그보다 앞서 시대의 화두가 되었던 민주공화국이란 용어 역시 그 정도에까지는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전환기 희망을 전달하는 긍정적인 어감의 단어가 될 수는 없었다. 한동안 민주공화국은 시대를 이끄는 이념으로서의 활력을 잃은 채, 헌법교과서에서나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맥 빠진 법률용어로 남아 있어야 했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게 된 것은 민주화의 열기가 고양되어 있던 1990년대에 들어서였다. 권용립은 1991년에 공화주의를 미국 보수주의의 한 요소로 소개하는 연구를 발표하였고,⁶⁹⁾ 조승래는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과 무절제한 사적 이해의 추구 등 사회병리적 현상이 만연되고”⁷⁰⁾ 있는 당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공화주의를 소개하였다. 앞의 권용립의 연구가 비판적 시각에서 공화주의를 연구한 것이라면, 조승래의 연구는 보다 긍정적 입장에서 공화주의로부터 우리 사회의 이념적 대안을 발견하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의 병리적 현상이 문제의식의 밑바탕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공화주의는 이때까지도 여전히 보수적 색깔을 지니고 있었다. 물론 이외에도 간헐적인 공화주의 소개가 이어지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이들의 연구는 민주화의 열기에 파묻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지나쳤다.

최근에 보이는 민주공화국 담론의 분출은 1997년 갑자기 들이닥친 전대미문의 외환위기가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는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급속히 확산되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의 양극화와 함께 경제력에 의한 사회 각 영역에 대한 지배가 심화되면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대안으로서 공화주의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마침 1990년대 말은 수용의 시차(時差)를 고려할 때, 조금 앞선 미국의 자유주의-공화주의 논쟁의 본격적인 수용이 이루어지기에 적절한 시점이기도 했다.⁷¹⁾

69) 권용립, 『미국-보수적 정치문명의 사상과 역사』(역사비평사, 1991), 65-86면.

70) 조승래, 「공화주의」, 김영한/임지현 편, 『서양의 지적 운동』(지식산업사, 1994), 274면.

71) 미국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현대적 논의는 1960년대 베일린(Bernard Bailyn)이나 포콕(John

이상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오늘날 민주공화국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공화’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바탕이 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자생적 발전의 결과라기보다는 서구의 공화 개념에 대한 새로운 수용에서 기인한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서구에서의 공화의 개념사에 대한 총체적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화 개념에 대한 논의는 때로는 공화국의 이름으로, 때로는 공화주의라는 이름으로 혼용되며 이루어지고 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공화국의 내용을 그 실질적 원리나 이념의 관점에서 논의할 때 공화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⁷²⁾ 공화주의라는 용어가 이전에도 사용되지 않은 바는 아니다. 그러나 요즘 공화주의라는 용어가 특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공화국을 실질적 이념이나 원리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우리 시대의 한 특징을 보여준다.

오늘날 공화 개념의 출발 역시 공화국에 해당하는 라틴어 *res publica*의 원의(原義)에 따라 공화국은 ‘모두의 나라’, 즉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어떻게 모두의 나라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이르면, 정리하기 벅찰 정도의 다양한 개념이 분출되고 있으며, 서구에서 논의되는 여러 공화주의 유형들이 어지럽게 거론되기도 한다. 마키아벨리를 중심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는 고전적 공화주의와 현대적 공화주의, 공동체주의로 이해되는 시민적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와의 길항적 공존을 모색하는 자유주의적 공화주의, 시민적 공화주의의 기원을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에 돌리면서 공화주의의 근원을 로마적 전통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신로마 공화주의, 가치의 다원성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른 일원적 공화주의와 다원적 공화주의 등, 실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공화주의에 대한 접근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 중 후자의 유형들은 공화주의 전통의 현대적 변용으로서 자유주의와의 대립보다

Pocock) 등에 의한 역사학계의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1980-90년대 헌법학과 정치학 연구에로까지 확산되면서 세계적인 공화주의 연구 붐을 선도했다.

72) 조승래는 공화국에 대한 규범적 논의가 공화주의라고 설명한다. 조승래, 『공화국을 위하여』 (도서출판 길, 2010), 33면.

는 그 포섭을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 정도 서로 중첩적이다.⁷³⁾

후자 유형의 입장에서 민주공화국의 개념을 규범적으로 규정하고자 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곽준혁을 들 수 있다.⁷⁴⁾ 그는 신로마주의자들의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공화주의에 내재된 일반적 원칙을 '비지배적 상호성(reciprocal non-dominance)'으로 파악한다. 이는 타인의 자의적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조건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정치적 견제력을 보장받는 적극적 시민성으로의 전환을 의도하며, 상호 관계를 통해 비지배적 조건이 행위의 준칙으로 내재화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원칙이다.⁷⁵⁾ 그에 따르면, 비지배적 상호성이야말로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양식을 조정하는 원칙이며, 민주공화국의 현재적 실천적 의미를 나타내는 원칙이라는 것이다.⁷⁶⁾

민주공화국을 이해하는 또 다른 하나의 입장은 서구의 공화주의 전통이 단일하지 않음을 의식하면서도, 공화주의 전통의 다양한 요소들을 큰 틀에서 아우르는 열린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역사학자 조승래는 공화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화국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의 지배가 법치를 통해 실현되는 나라이다. 이때 공동의 지배라는 것은 바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공의 일에 대한 참여와 심의를 통해 공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또한 법치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참여한 과정에서 이성적 심의를 통해 제정된 성문법에 따라 지배하고 그 아래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공화국은 자신의 일보다 공동의 일을 더 우선시하는-적어도 공동의 일이 중요하다고 보는-인간들을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그들의 정치

73) 공화주의의 내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는 곽준혁, 「공화주의」, 한국정치학회 편, 『정치학 이해의 길잡이: 정치사상』(법문사, 2008), 188-199면.

74) 뒤에서 언급하게 될 헌법학자 한상희와 이국운 역시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적 입장에서 공화주의를 이해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75) 곽준혁, 「왜 그리고 어떤 공화주의인가」, 『아세아연구』 131(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08), 159면.

76) 곽준혁의 신로마 공화주의에 경도된 입장은 후에 약간 완화된 듯이 보인다. 곽준혁, 앞의 글(각주73), 198-199면.

적·사회적 연대가 곧 공화국이다.⁷⁷⁾

이어 그는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제도로서의 혼합정체, 시민적 자유의 기초로서의 시민권, 시민적 평등의 기초로서의 토지균분, 공공적 삶을 살아가는 시민적 덕성, 그리고 지배의 부재로서의 자유를 공화주의의 주요 요소로 들었다.⁷⁸⁾

비슷한 입장에서 김경희 역시 공화주의를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시민적 덕성을 실천하는 정치 질서를 세우는 것을 목표”⁷⁹⁾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공화주의의 핵심 요소로서 주종적 혹은 예속적 지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자유, 법치, 공공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민적 덕성, 각기 다른 세력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기 위한 혼합정체를 들었다.⁸⁰⁾

공화주의를 이해하는 두 경향은 무엇보다도 공화주의에 접근하는 관심 방향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객준혁으로 대표되는 입장은 공화주의에 내재된 일관된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는 이론적 관심에서 출발한다. 반면 공화주의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추구하는 입장은 공화주의를 이론이 아닌 그 자체 하나의 “운동”⁸¹⁾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공화주의 안에 서로 모순될 수 있는 요소들이나 극단적으로 강조될 경우 자기파괴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공화주의를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에 대응”⁸²⁾하여 국가가 공공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산물로 이

77) 조승래, 앞의 책(각주72), 6면.

78) 조승래, 앞의 책(각주72), 17-52면

79) 김경희, 『공화주의』(책세상, 2009), 12면.

80) 김경희, 위의 책, 80-99면. 양해림 역시 비슷한 입장에서 공화주의란 “공적 이해를 사적 이해보다 우선시하는 공민성, 덕성, 활발하고 적극적인 정치참여, 평등하고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 다수의 자의적 의지가 아닌 법에 의한 통치, 삼권분립에 기초한 정부 형태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설파한다. 양해림, 『한국사회에서 공화주의의 이념은 부활할 수 있는가: 공화주의의 정치철학적 고찰』, 『시대와 철학』 19-1(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8), 10면.

81) 김경희, 위의 책, 19면.

82) 김경희, 위의 책, 19면.

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에서는 “현재성, 현장성, 맥락성”⁸³⁾이 중요시 되고, 보편적 원칙이 아니라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균형을 찾는”⁸⁴⁾ 중용적 지혜가 요구되는 것으로 본다.⁸⁵⁾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공화주의의 특정 요소들을 강조하는 공화주의에 대한 이해 또한 이해할 수 있다. 가령 아렌트와 무페의 공화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소통과 참여, 그리고 법치를 강조하는 입장이나,⁸⁶⁾ 시장에서 탈락한 사람이라도 주권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보장’하는 ‘사회적 공화주의’에서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보는 입장⁸⁷⁾ 등은 그러한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역사의 특정 시대를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에서는 거의 이런 경향들이 다소간에 발견된다. 국가형태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입장,⁸⁸⁾ 경제적 균등을 공화주의와 등치시키는 입장,⁸⁹⁾ 혹은 공화주의를 “대표의 독립적 판단과 폭넓은 재량권을 강조하는 한편, 정당에 의한 시민 덕성의 부패나 의회제도의 비효율성을 비판[하고], 기본적으로 다수 대중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협시하면서도, 공동체의 안전이나 공공선의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헌신과 동참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⁹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듯 민주공화국에 대한 개념이 개방된 상태로 남아 있는 만큼, 우리 현실에서 민주공화국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기대나 평가 또한 다양하다. 앞에서 이

83) 김정희, 위의 책, 19면.

84) 김정희, 위의 책, 19면.

85) 포괄적 공화주의가 공동체를 강조함으로써 빠질 수 있는 전체주의적 위험에 대해서도 공화주의의 그러한 성격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의 ‘동질적인 위기의 순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말로써 비판을 피해간다. 조승래, 앞의 책(각주72), 43면.

86) 이동수, 「민주화 이후 공화민주주의의 재발견」, 『동양정치사상사』 6-2(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6.9), 5면.

87) 급민, 『사회적 공화주의』(박종철출판사, 2007), 33면.

88) 박찬승, 앞의 글; 윤대원, 「한말 일제 초기 정채론의 논의 과정과 민주공화제의 수용」, 『중국근현대사연구』 12(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2001) 등.

89) 서회경·박명림,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30-1(2007) 등.

90) 박현모, 앞의 글, 76면.

미 언급했듯이, 오늘날 민주공화국이 매력 있게 다가오게 된 것은 신자유주의의 확산 그리고 경제의 사회지배력 공고화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주장되는 민주공화국은 주로 진보적 아젠다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민주공화국은 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의 개입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⁹¹⁾ 그러나 민주공화국에서 보수적 대안을 보는 시각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조정되지 못한 이해들의 과격한 충돌과 포퓰리즘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보고, 공화주의로부터 공공선을 향한 심의장치로서의 대의제의 원활한 작동과 시민적 덕성의 강조를 끌어내고 있다. 나가서는 공화주의 담론이 독재 혹은 집단주의적 경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⁹²⁾ 과연 공화주의가 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이념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⁹³⁾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시기 민주공화국 개념의 실질화는 모처럼 법학계에도 반응을 불러내었다. 공화주의 르네상스의 비교적 이른 시기에 미국의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와 헌법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헌법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났다.⁹⁴⁾ 그러나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공화주의가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 규정을 통하여 우리 헌법의 이념이나 해석 원리로 확고하게 정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가장 최근의 연구는 헌법학에서 공화주의가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과연 그것이 독자적 이념이나 원리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공화주의 이념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나타

91)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김상봉, 「모두를 위한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공화국의 이념에 대한 철학적 성찰」, 『시민과 세계』 8(2006)과, 참여를 강조하는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 2002) 등이 대표적이다.

92) 박현모, 앞의 글, 90면.

93) 이명순, 「공화주의의 유형과 그 비판」, 『철학사상』 26(2007), 293면.

94) 한상희,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함의: 공화주의 논쟁과 동태적 주권론」, 『일감법학』 3(1998.12); 동인,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함의: 공화주의적 대안의 모색」, 『일감법학』 5(2000.12); 동인, 「민주공화국의 함의: 그 공화주의적 실천규범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학연구』 9-2(2003. 8); 이국윤, 「공화주의 헌법이론의 구상」, 『법과사회』 20(2001).

내고 있다.⁹⁵⁾ 이렇듯 민주공화국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헌법학적 전환에 유보적인 태도가 지속되는 한에는 당분간 민주공화국에 대한 법학적 개념과 일반의 개념 사이에 균열은 불가피해 보인다.⁹⁶⁾

V. 전망

- 맺음말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민주공화국 개념은 이 땅에 처음 수용된 이래로 개념 변용을 하여오면서 다양한 역사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개념 변용의 시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가 어떤 개념적 특징을 민주공화국에 각인시켜 놓을 것인가 하는 점은 아직 미지수이다. 모두가 공화국은 '모두의 나라'여야 한다는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의 원의로부터 출발하지만, 어떻게 모두의 나라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하위의 내포 개념들에 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생각들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앞으로 정치공동체로서의 우리의 현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 민주공화국의 이념으로써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그러한 대응이 적절한 것인지에 관한 우리 사회의 합의 달성 여부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더 깊은 각인은 그런 합의가 헌법학적으로 수용될 것인가에 최종적으로 달려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공화국 앞에는 특별히 두 가지의 도전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는 세계화 추세로부터 오는 도전이다. 한 사회 내 우월적 혹은 특권적

95) 김선태, 「공화국원리와 한국헌법의 해석」, 『법제』(2008. 9); 최유, 「현대공화주의 정치사상과 헌법」, 『법정논총』 39(중앙대, 2004).

96) 앞의 자유주의적 공화주의파 학자들 외에도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해설에서 종래 형식적 민주공화국 이해로부터 벗어나려는 몇몇 시도들이 보이지만, 그러한 해설이 어떻게 의미연관을 이루는지 설명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일반 학계의 문제의식과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한태연의 앞의 글은 미국과 프랑스 헌법에서의 공화주의 논의의 역사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지만, 정작 결론에서는 한국헌법에서의 공화국의 문제를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있다.

지위가 세계적 차원의 그물망 속에 위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얼마나 될까? 다시 말하여 더 이상 한 국가 차원에 머물지 않는 새로운 지배형태에 민주공화국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제 민주공화의 이념도 한 국가의 범위 내에서는 의미를 잃고, 세계공동체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헌법의 아버지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도시국가적 차원에 머물러 있던 공화주의 이념을 미국이라는 광대한 연방국가에 적용시켰듯, 세계화라는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발상이 민주공화의 개념을 변화시켜 갈 것인가?

둘째는 우리 사회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서 오는 도전이다. 다양하게 유입될 이질적인 소수문화에 대해 민주공화국은 공화주의적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여 소수 이민자 사회에 비지배의 자유, 정치적 평등의 조건을 갖추어 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소수문화를 보호하고 장려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들 소수문화에 관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 혹은 여기서 더 나가 주류문화에 흡수·통합해 나가는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공공선에 더 부합한 것인가?

민주공화국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의미 있는 개념어로 남아 있기 위해서는 개념 투쟁이 더욱 구체적으로 활발히 일어나야 하는 이유이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

『地球圖經』

『한성순보』

곽준혁, 「공화주의」, 한국정치학회 편, 『정치학 이해의 길잡이: 정치사상』, 법문사, 2008.
 _____, 「왜 그리고 어떤 공화주의인가」, 『아세아연구』 131,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08.

곽한탁, 「헌법」, 『태극학보』 6, 1907. 1.

권오영, 『최한기의 학문과 사상 연구』, 집문당, 1999.

권용립, 『미국-보수적 정치문명의 사상과 역사』, 역사비평사, 1991.

금 민, 『사회적 공화주의』, 박종철출판사, 2007.

김경희, 『공화주의』, 책세상, 2009.

김상봉, 「모두를 위한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공화국의 이념에 대한 철학적 성찰」,
 『시민과 세계』 8, 2006.

김선태, 「공화국원리와 한국헌법의 해석」, 『법제』, 2008.

김성희, 「국가의의」, 『대한자강회월보』 13, 1907. 7.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0.

김용구, 『세계관 충돌의 정치경제학』, 나남, 1997.

김정명 편, 『朝鮮獨立運動II』, 明治百年史叢書(原書房, 1967), 영인본, 국학자료원, 1999.

김효전, 『헌법』, 소화, 2009.

나진·김상연 역술, 『국가학』(1906), 영인본, 민족문화, 1986.

노경채, 「신한독립당」,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23600&ty=2>(검색일: 2010.7.21)

대통령비서실 편,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I : 최고회의편』, 대한공론사, 1976.

대한민국국회, 『제헌국회속기록1』, 영인본, 선인문화사, 1999.

대한민국국회도서관, 『대한민국입시의정원문서』, 대한민국국회, 1974.

미상, 「국가의 주동력」, 『대한유학생회보』 2, 1907.

- 미상, 「국가의 개념(續)」, 『서북학회월보』 1, 1908. 6.
- 미상, 「一瞥」, 『개벽』 37, 개벽사, 1923. 7.
- 미상, 「露西亞特輯」, 『삼천리』3-9, 삼천리사, 1931. 9.
- 박일경, 『헌법』, 조문사, 1949.
- 박찬승, 「한국의 근대국가 건설운동과 공화제」, 『역사학보』 200, 역사학회, 2008.
- 박현모, 「박정희의 ‘민주공화주의’관 변화 연구: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6-2,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7.
- 법률독서인, 「국체의 구별」, 『대동학회월보』 8, 1908.
- 서희경·박명림,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30-1, 2007.
- 선우순, 「국가론의 개요 9호속」, 『서북학회월보』 11-12, 1909.
- 설의식, 「임정을 앞두고」, 새한민보편집국, 『임시정부수립대강: 미소공위자문단답신집』, 새한민보사, 1947.
- 송 민, 「합중국과 공화국」, http://www.korean.go.kr/nkview/nklife/2001_3/11_7.html (검색일 : 2010. 7.21).
- 신우철, 『비교헌법사: 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 범문사, 2008.
- 양해림, 「한국사회에서 공화주의의 이념은 부활할 수 있는가: 공화주의의 정치철학적 고찰」, 『시대와 철학』 19-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8.
- 원영의, 「정체개론」, 『대한협회회보』 3, 1908.
- _____, 「정치의 진화(續)」, 『대한협회회보』10, 1909.
- 유길준, 『서유견문』, 영인본, 경인문화사, 1969.
- 유성준, 『법학통론』, 박문사, 1905.
- 유진오, 『신고 헌법해의』, 탐구당, 1952.
- 윤대원, 「한말 일제 초기 정체론의 논의 과정과 민주공화제의 수용」, 『중국근현대사연구』 12,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2001.
- 이국운, 「공화주의 헌법이론의 구상」, 『법과사회』 20, 2001.
- 이동수, 「민주화 이후 공화민주주의의 재발견」, 『동양정치사상사』 6-2,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6. 9.
- 이명순, 「공화주의의 유형과 그 비판」, 『철학사상』 26, 2007.

- 정옥자, 「신사유람단고」, 『역사학보』 27, 역사학회, 1965.
- 정학섭, 「일제하 해의 민족 운동의 좌우합작과 삼균주의」, 『사회와 역사』 1, 한국사회사학회, 1986.12.
- 조승래, 「공화주의」, 김영한/입지현 편, 『서양의 지적 운동』, 지식산업사, 1994.
- _____, 『공화국을 위하여』, 도서출판 길, 2010.
- 최 유, 「현대공화주의 정치사상과 헌법」, 『법정논총』 39, 중앙대, 2004.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 편집부, 『영한사전』, 교분관, 1914.
- _____, 『사회과학사전』, 선문사, 1954.
- 한상희,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함의: 공화주의 논쟁과 동태적 주권론」, 『일감법학』 3, 1998.
- _____,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함의: 공화주의적 대안의 모색」, 『일감법학』 5, 2000.
- _____, 「민주공화국의 함의: 그 공화주의적 실천규범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학연구』 9-2, 2003.
- 한태연, 「공화국의 이론적 과제: 미국헌법과 프랑스헌법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24, 동아대 법학연구소, 1998.
- 加藤周一・丸山眞男, 『翻譯の思想』, 岩波書店, 1991.
- 諸橋轍次, 「共和」, 『大漢和辭典』 卷二, 大修館書店, 昭和 59.
- J. Isensee, “Republik”, in: *Staatslexikon* 4, Freiburg · Basel · Wien: Verlag Herder, 1988.
- Xiong Yuezhi, “Liberty, Democracy, President: The Translation and Usage of Some Political Terms in Late Qing China”, in: M. Lackner, *New Terms for New Ideas: Western Knowledge and Lexical Change in Late Imperial China*, Leiden: Brill, 2001.

<Abstract>

History of the Concept of 'Democratic Republic'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oncept of 'Republic'—

Lee, Young Lok*

The terms of 'democracy' and 'republic' were respectively introduced in Korea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Both had been interchangeably used as terms that meant the state form of non-monarchy, but with some exceptions. The term 'democratic republic' first appeared in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1919. 4.11) among constitution texts, which was the first case in the world as well.

The conception of the term, which by then had been understood as a kind of state form, had been shaken in the 1930's by its connection with the idea of equality influenced by Samgyun-ism. Then it acquired the opposing meaning from the left wing's concept of people's republic in the period of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when the separation of power had become the key element of its conception. During the third and fourth Republic, the term had been favorably used by the ruling clique as a rhetoric with which they put an emphasis on 'the unity for a wealthy nation'.

Though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just after the collapse of the fourth Republic had influenced people temporarily to keep a distance from the term, which was coloured with conservative nuance, discourses regarding the term have exploded nowadays. It is

* Associate Professor of Law, School of Law, Chosun University

relevant to the fact that libertarianism had strong influences in almost all areas of society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In other words, people expect to find an opposing ideology to libertarianism from the idea of democratic republic. Nevertheless, its conceptions are still so various that conservatives as well as progressives use the term in order to support their causes. Globalization and multi-society are other challenges that it should overcome to become meaningfully functioning.

[Key Words] democratic republic, non-monarchy, equality, anti-communalism, unity for wealthy nation, libertarianism

접수일 : 2010.10. 7; 심사일 : 2010.10. 7~19; 게재확정일 : 2010.10.19